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2003. 6.

환 경 부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 6913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연구기관을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거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내지 제7항)
- 다.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 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공사에 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 라.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마. 환경관련 법령 위반, 부도, 사업장의 이전, 폐업·휴업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 바.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증수탁기관)에 위탁함(안 제33조제5항)

대통령령 제 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중 “제5조제1항제9호”를 “제5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중 “서류심사”를 각각 “현장조사·서류심사”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환경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 부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기간은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환경신기술표지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의 공공단체

②발주기관은 환경시설 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4(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제6호중 “제11조제4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대기·수질 또는 소음·진동”을 “대기·수질, 먹는 물 또는 소음·진동”으로 한다.

6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9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2.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제22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9조의3제3호에서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

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도등으로 환경개선계획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미만인 사업장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폐업하거나 휴업신고후 6월이내에 재가동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과 환경성적 산출에 필요로 하는 국가기반산업, 기초소재·수송·공정·폐기 등의 전과정 목록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의 교부신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또는 교육 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중 “법 제20조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를 “환경표지등의”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원등) ①정부는 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환경표지표시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2월”을 “3월”

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표지표시제품의”를 “관련규정의 정비등 환경표지 표시제품의”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관은 상근 임직원 10인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제33조제3항제8호중 “출입·검사”를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u> <u>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u>
제12조(환경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제12조(환경분야 연구기관) ----- ----- <u>제10호</u> ----- ----- ----- -----.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 기술지정은 <u>서류심사</u>의 방법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 <u>서류심사·현장평가</u> 및 <u>종합평가</u>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평가 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현장조사·서류심사</u> ----- ----- <u>현장조사·서류심사</u> ----- -----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⑥-----현장조사·서류심사-----

-.
⑦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환경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 부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2(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기간은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신기술표지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환경신기술표지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의 공공단체

②발주기관은 환경시설 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4(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

제22조(측정분석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신설> 7. (생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신설>	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측정분석기관) ----- ----- ----- --. 1. ~ 5. (현행과 같음) 6.-----제23조의2제1항----- ----- 6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 7. (현행과 같음) 8.----- 대기·수질, 먹는 물 또는 소음·진동----- ----- 제22조의2(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9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

<신 설>

2.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제22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9조의3제3호에서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도등으로 환경개선계획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가 일정기준 미만인 사업장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 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 함될 사항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 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 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 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 -----환경표지등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원등) ①정부는 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환경표지표시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31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 기관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1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 기관등) ① ----- ----- -----.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관은 상근 임직원

1. ~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u>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8.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u>출입·검사</u> 9. (생략) ④ (생략)	<u>10인이상인 기관에 한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3월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관련</u> <u>규정의 정비등 환경표지표시제품의</u>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u>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
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
 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인증수탁기관의 명칭·주
 소·대표자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4조(업무규정) ①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
 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1. 환경표지등의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사
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
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및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업무
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